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발 주 자 :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한국정보공학㈜-HPE BL860Ci6(4대), HPE BLC7000(1대), HPE MSA 1050(1대),

제1조(목적)이 협약은 (2027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)에 대하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발주자(이하 "발주자")로서 한국정보공학㈜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(이하 "제조사"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"제조사"이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제조사"의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발주자"와 "제조사"이 협의하는 금액(HPE BL860Ci6(4대)-~~₩~~9,900,000, HPE BLC7000(1대)-~~₩~~3,300,000, HP MSA 1050(1대)-~~₩~~4,400,000)부가세 포함으로 한다.

제4조(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제조사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제조사"은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22일

발주사 :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 : 한국정보공학㈜ (인)

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발 주 자 :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○ 제 조 사 : (주)맨텍솔루션-이중화솔루션(HA Solution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2027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)에 대하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발주자(이하 "발주자")로서 (주)맨텍솔루션은 제조사 또는 공급사(이하 "제조사"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"제조사"이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·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 ·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발주자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제조사"의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 ·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발주자"과 "제조사"이 협의하는 금액 (이중화솔루션(HA Solution)-₩7,700,000))부가세 포함으로 한다.

제4조(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제조사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제조사"은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22일

발주사 :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(인)

제조사 : ㈜맨텍솔루션 (인)

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
○ 발 주 자 :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○ 제 조 사 또는 공급사 : ㈜에스씨지솔루션-VPLEX(1식), VNX 5200 Storage(2대), EMC DS-300B 16Port SAN Switch(4식), PowerStore 500T(2대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2027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)에 대하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발주자(이하 "발주자")로서 ㈜에스씨지솔루션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(이하 "제조사"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"제조사"이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발주자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제조사"의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발주자"과 "제조사"의 협의하는 금액(DELLEMC VPLEX(1식)-₩6,600,000,VNX5200 Storage(2대)-₩13,200,000,EMC DS-300B 16Port SAN Switch(4식)-₩1,600,000,PowerStore 500T(2대)-₩11,000,000) 부가세포함 으로 한다.

제4조(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제조사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제조사"은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0월 22일

발주사 :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에스씨지솔루션 (인)